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10-0000	규 사	┌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_2)이 90% 이하의 것	10	규 사	┌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_2)이 90% 이하의 것
90	기 타	└	90	기 타	└
2517	자갈, 왕자갈, 쇄석(콘크리트용, 도로 포장용,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	자갈, 왕자갈, 쇄석(콘크리트용, 도로 포장용,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자갈, 왕자갈, 쇄석, 싱글과 플린트	┌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10	자갈, 왕자갈, 쇄석, 싱글과 플린트	┌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1-0000	대리석의 것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41	대리석의 것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10-0000	잉곳(ingot)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잉곳(ingot)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0000	기 타		90	기 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9-0000	기타		19	기타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0-0000	51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1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2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2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3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4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4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타		90 기타		
	기타		기타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5			25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27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8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8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90-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기타			기타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 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 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영국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 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 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 회장에게 위탁 한다.	11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영국 으로 수출 하는 다음의 것에 대 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 에게 위탁 한다.
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합석판을 포함한다)	「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합석판을 포함한다)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 한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 한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1-0000	물결 모양의 것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1	물결 모양의 것	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9	기타	」	49	기타	
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ㄱ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9-0000	기타	」	69	기타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0	기타	「미국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 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 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3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기타		19	기타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
29	기타		29	기타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0	기타	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60-0000	클래드(clad)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0	클래드(clad)한 것	「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 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튜브모양의 마디·리브(rib)·	「	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튜브모양의 마디·리브(rib)·	「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0-0000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9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99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타			기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10-0000	단조(鍛造)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단조(鍛造)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9	기타		99	기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0000	기타		90	기타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1-0000	엘(L)형강		21	엘(L)형강	
22-0000	티(T)형강		22	티(T)형강	
31-0000	유(U)형강		31	유(U)형강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2-0000	아이(I)형강		32	아이(I)형강	
33	에이치(H)형강		33	에이치(H)형강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9	로 한정한다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9	로 한정한다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0-0000	기타		90	기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9	기타	┌	99	기타	┌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으 로 한 정 한 다)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으 로 한 정 한 다)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 다.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 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 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 호에 따라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것			것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90	기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0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	90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19-0000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
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0000	그 밖의 봉		30	그 밖의 봉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0-0000	형강(形鋼)	┌	40	형강(形鋼)	┌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0	기타		90	기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9-0000	기타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 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 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 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2	포한 것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2	포한 것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 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 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 한다.
99	기타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9	기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 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 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 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 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 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19-0000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 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 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 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0-0000	고속도강의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고속도강의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9	기타	「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9	기타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10-0000	고속도강의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고속도강의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90	기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10-0000	고속도강의 봉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고속도강의 봉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 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 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 게 위탁한다.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20	실리코망간강의 봉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 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 ├ ├ └	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 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60	그 밖의 봉		60	그 밖의 봉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70	형강(形鋼)		70	형강(形鋼)	
80-0000	중공(中空)드릴봉		80	중공(中空)드릴봉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 하는 다음 의 것에 대한 수출 승인에 대한 권한을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 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 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 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 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 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 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 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 회장에게 위탁한다. ┌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90	기타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현행			개정안		
H S	품목	수출요령	H S	품목	수출요령
10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널말뚝(sheet piling)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널말뚝(sheet piling)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 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뿔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 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뿔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10	레일(rail)		10	레일(rail)	
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90-0000	기타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0000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9-0000	기타	┌ ├ └	29	기타	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39-0000	기타		39	기타	
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49-0000	기타		49	기타	
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59-0000	기타		59	기타	
90-0000	기타		90	기타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000	기타		19	기타	
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9-0000	기타		39	기타	
90-0000	기타		90	기타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9-0000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9	기타		29	기타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90	기타		90	기타	